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02.05.)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5호(2010.04.15.), 제2011-411호(2011.12.29.), 성북구고시 제2012-66호(2012.05.17.), 제2013-10호(2013.01.17.)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성 북 구 청 장**

### 가. 변경 결정 취지

- L10 정거장 외부출입구 #2 구간의 구조물 변경(계단→에스컬레이터)과 구조물 변경으로 설치구간 보도확보를 위해 일부 정거장 면적의 증가가 필요하므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을 하기 위함.

##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조서

### 가)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철도	도시철도 (L10)	성북구 정릉동 966-312호 일대	2,257	증)38	2,295	서고 제2009-44 (2009.02.02.)	

##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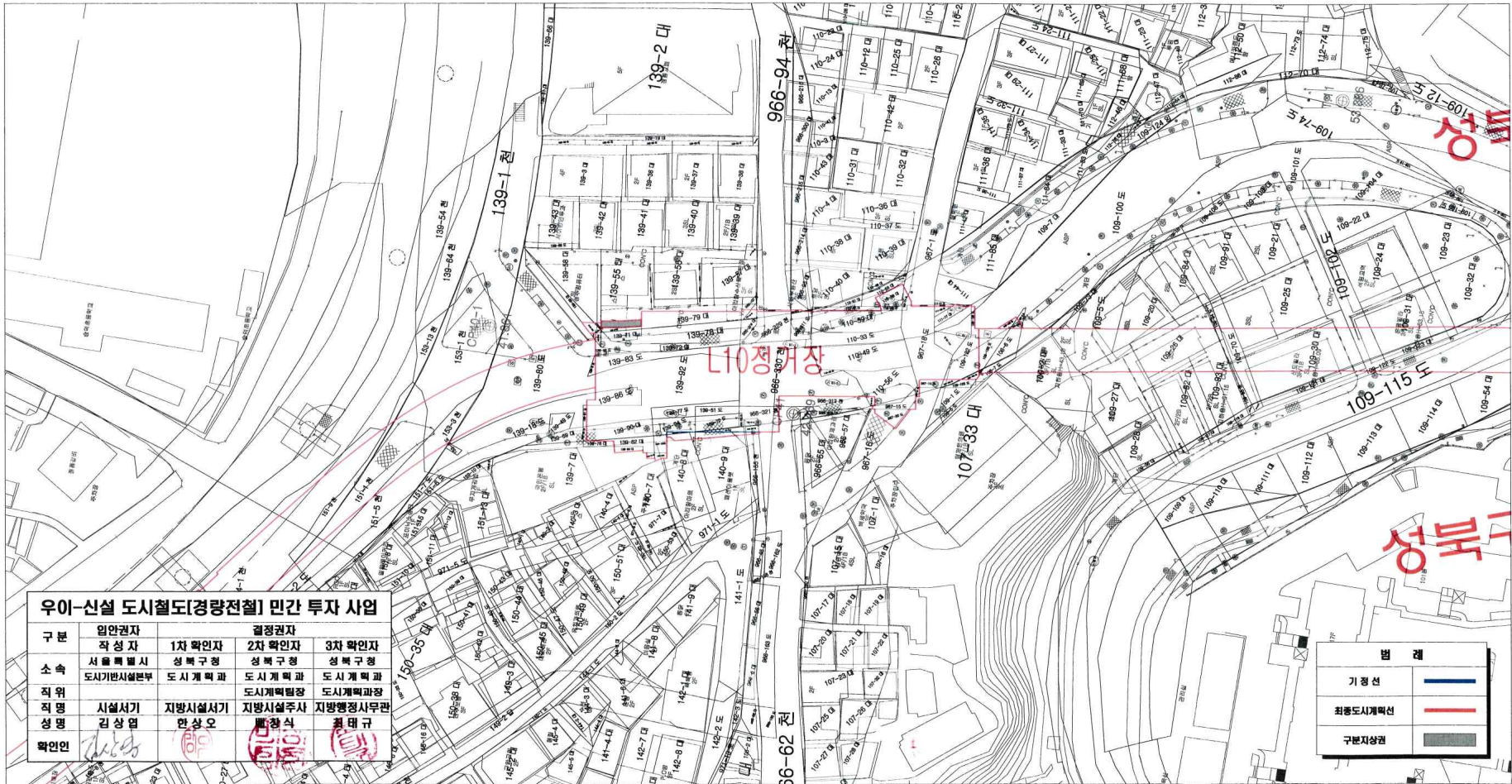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722-7189), 성북구청-도시계획과  
(☎2241-276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L10 정거장)

S = 1 : 1000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 투자 사업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직영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3차 확인자	
소속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본부	성북구청	성북구청	성북구청	
직위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직명	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김상현	한상오	홍창식	최태규	
확인인					